##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41

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:조계원·김준혁·김문수

주철현 • 윤준병 • 임오경

양부남 • 양문석 • 김현정

박지원 • 박해철 • 허종식

이재관 • 민형배 • 문금주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연과 관련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최근 오페라글라스, 망원경 형태의 캠코더로 공연 전체를 촬영해 파일을 거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. '밀녹(몰래 녹화) · 밀캠(몰래 촬영)' 등 공연에 대해 불법적인 촬영 · 녹화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함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.

현재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 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공연에 대해서도 이 에 준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이에 위치 · 용도 ·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

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저작재산권자의 공연을 녹음·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 없이 녹음·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(안 제104조의6제 2항 신설, 제137조제1항 및 제140조제2호).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.

법률 제 호

###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의6의 제목 중 "영상저작물"을 "영상저작물 및 공연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누구든지 위치·용도·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저작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연기·무용·연주·가창·구연·낭독이나 그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공연(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녹음·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없이 녹음·녹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7조제1항제3호의3 중 "제104조의6"을 "제104조의6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4. 제104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

제140조제2호 중 "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"를 "제13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3호의2, 제3호의3, 제4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4조의6( <u>영상저작물</u> 녹화 등	제104조의6(영상저작물 및 공연
의 금지) (생 략)	녹화 등의 금지) <u>①</u> (현행 제목
	외의 부분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누구든지 위치・용도・규모
	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
	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
	에서 저작권, 그 밖에 이 법에
	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
	의 연기 · 무용 · 연주 · 가창 ·
	<u>구연·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</u>
	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
	는 공연(영리를 목적으로 실연
	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녹음
	·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
	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
	허락없이 녹음・녹화하여서는
	<u>아니 된다.</u>
제137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	제137조(벌칙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	
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	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
1. ~ 3의2. (생 략)	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3의3. <u>제104조의6</u> 을 위반한 자	3의3. <u>제104조의6제1항</u>

### <신 설>

4. ~ 7. (생략)

② (생략)

- 제140조(고소)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. 다 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(생략)
  - 2.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, <u>제137</u>
    <u>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</u>,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

<u>3의4. 제104조의6제2항을 위반</u>
<u>한 자</u>
4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140조(고소)
1. (현행과 같음)
2
제137조
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
제3호의2, 제3호의3, 제4호